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
일부개정법률안
(정동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16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2.

발 의 자 : 정동만 · 박성민 · 이인선
김태호 · 김선교 · 윤영석
김용태 · 조지연 · 김성원
구자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,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해서는 국유·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,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.

그런데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내용에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생산비 절감 등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1조).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원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.

2. 전략산업등의 영위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1조(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 1. (생략) <u><신설></u> 2. (생략) ② ~ ⑧ (생략)	제21조(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원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전략산업등의 영위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</u> <u>용료</u> 3. (현행 제2호와 같음) ② ~ ⑧ (현행과 같음)